

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홍보

- ❶ 일반 화물운반업자는 허가없이 폐기물 수집·운반이 원칙적 불가하며,
일반 화물운송업자가 폐기물을 무허가로 운반할 경우 징역형(또는 벌금형),
처리책임이 부과

※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제3항, 제64조제5호 : 5년 이하 징역, 5천만원 이하 벌금

< 폐기물로 의심되는 운송대상 >

- ① 여러 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
- ② 용기 겉 표면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
- ③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라고 기재된 경우
- ④ 기름냄새, 휘발성 유기용제 냄새가 나는 경우

- ❷ 공장·토지 등 임대 시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고,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
있는지 토지소유자가 주기적으로 확인

< 임대한 공장·토지 내 불법투기 주요 유형 >

- ① 자재, 의류 등 보관을 위해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
- ② 시세보다 높은 금액에 임야·잡종지를 단기 임대하는 경우
- ③ 평범한 고물상으로 위장하거나, 울타리(펜스) 등으로 내부를 은폐하는 경우